

## NEWSLETTER

April 2020

베트남 그룹  
Vietnam Practice Group

## CONTACT



외국변호사 한윤준

T: +84.28.3827.3886  
E: [younjoon.han@leeko.com](mailto:younjoon.han@leeko.com)

외국변호사 홍성미

T: +84.9.4183.6655  
E: [sungmee.hong@leeko.com](mailto:sungmee.hong@leeko.com)

변호사 김희웅

T: 02.772.4428  
E: [heewoong.kim@leeko.com](mailto:heewoong.kim@leeko.com)

변호사 백웅렬

T: 02.772.4481  
E: [woongryol.baek@leeko.com](mailto:woongryol.baek@leeko.com)

## COVID 19 Newsletter I

## 코로나사태 관련 베트남 정부 동향 및 대응지침

베트남 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(이하 ‘코로나 19’ 또는 ‘COVID-19’)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, 베트남 총리는 각 정부부처에 코로나 19의 피해 최소화 및 극복을 위한 각종 지침을 내리고,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.

베트남 총리는 2020. 3. 4. 자 결정문 Directive No. 11/CT-TTg (이하 ‘Directive 11’)을 통하여, 베트남 중앙은행 및 재무부 등 각 정부부처에 코로나 19 사태로 영향을 받은 기업들에게 신용지원, 세금 감면, 인센티브 등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, 2020. 3. 31. 자 결정문 Directive No. 16/CT-TTg (이하 ‘Directive 16’)에서는 베트남 전 국민에게 사실상 봉쇄령에 준하는 강력한 사회적 격리를 요구하는 등 코로나 19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. 최근 베트남 보건부의 발표에 의하면 연속 7일 동안 베트남 내 확진자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고, 누적 확진자 총 268명 중 현재까지 223명이 완치되어 완치율이 약 83%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에, 베트남 정부는 2020. 4. 23. 0시부터 사회적 격리를 대부분 해제하는 완화 조치를 발표하였고, 다만, 2020. 3. 27. 자 결정문 Directive No 15/CT-TTg (이하 ‘Directive 15’)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.

Directive 15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- (1) 20인 이상의 대중 모임 금지, 사업장, 학교, 혹은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10인 이상 모임 금지, 공공장소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;
- (2) 20인 이상 참여하는 종교활동 금지 및 공공장소에서 문화, 체육 혹은 레크리에이션 활동 금지;
- (3) 필수 재화 및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되, 세부적인 내용은 각 성급 인민위원회에서 결정;
- (4) 지역 간 이동 자제 및 재화운송을 제외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한.

한편, 베트남 정부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내/외국인에 대한 격리조치를 그대로 적용하고, 여전히 각 지방 정부에 격리상황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요구하고 있으며, 비상상황을 제외한 병원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. 나아가, 베트남 정부는 각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코로나 19와 관련된 가짜 뉴스 등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, 금번 완화 조치 이후에도 health declaration 작성 및 격리조치에 관한 정부 지침 위반 시 형사책임 적용 등을 비롯한 기존 조치 일부가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.

베트남 총리의 결정문에 따라 각 정부기관이 현재까지 발표한 주요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.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기업인들은 각 정부기관 및 지방행정부가 발표하는 세부 조치의 내용을 파악하여 해당 기업 및 사업장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감면 및 납부 기간 연기를 포함한

경제적 혜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
| No. | 기관      | 후속조치   |
|-----|---------|--|
| 1   | 사회보장청   | <b>2020. 3. 17. 자 공문 (Official Letter No. 860/BHXH-BT)</b><br>2020. 6. (또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 시 2020. 12. )까지, 코로나 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일부 사업자의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납부 기간 연기  |
| 2   | 노동총연맹   | <b>2020. 3. 18. 자 공문 (Official Letter No. 245/TLD)</b><br>2020. 6. (또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 시 2020. 12. )까지, 코로나 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일부 사업자의 노동조합비 납부 기간 연기  |
| 3   | 사회보험공단  | <b>2020. 3. 25. 자 공문 (Official Letter No. 1064/LDTBXH-QHLDTL)</b><br>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른 근로 중단에 대한 지침 제공  |
| 4   | 중앙은행    | <b>2020. 3. 13. 자 시행규칙 (Circular No. 01/2020/TT-NHNN)</b><br>'(i) 대출 활동, 금융 리스에서 발생한 채무로서 (ii) 2020. 1. 23. 부터 총리가 코로나 사태 종료를 발표하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행기가 도래하고 (iii)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에 따라 상황이 불가능하게 된 원리금 채무'에 대한 채무 조정 가능성 제공 |
|     |         | <b>2020. 3. 16. 자 결정문 (Decision No. 418/QD-NHNN, 419/QD-NHNN, 420/QD-NHNN)</b><br>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한 주요 시중금리 인하   |
| 5   | 국세청     | <b>2020. 3. 03. 자 공문 (Official Letter No. 897/TCT-QLN)</b><br>지역 단위 세무서에, “코로나 19 사태로 피해를 받는 사업장에 대한 납세 기한 연장 및 체납세액 관련 제재 면제” 요청  |
| 6   | 최고인민위원회 | <b>2020. 3. 30. 자 공문 (Official Letter No. 45/TANDTC-PC)</b><br>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정부의 영업정지명령 위반 시 형법상 처벌 규정 준용  |
| 7   | 베트남 정부  | <b>2020. 4. 08. 자 시행령 (Decree No. 41/2020/ND-CP)</b><br>베트남 소재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, 법인소득세 및 토지사용료 납부 기한 연장 및 2020. 7. 30. 까지 기한 연장을 신청한 법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 |
|     |         | <b>2020. 4. 09. 자 시행령 (Decree No. 42/2020/ND-CP)</b><br>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, 근로자 및 빈곤층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책 추진 (각종 보조금, 수당 추가 지급 및 사용자에 대한 무담보·무이자 대출 포함)  |

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[상단 연락처로 연락](#) 주시기 바랍니다.

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, 법무법인(유)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 법무법인(유)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[\[수신거부\]](#)를 클릭해 주십시오.